

예 산 총 칙

2019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55,803,982	13,674,119
일반회계	443,370,754	13,301,123
특별회계	12,433,228	372,997
기타특별회계	12,433,228	372,997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1,163,751	34,913
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	1,275,670	38,270
건축진흥특별회계	576,333	17,290
농공지구조성및관리특별회계	371,000	11,130
주차장운영특별회계	602,652	18,080
공영터미널운영및관리특별회계	123,963	3,719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70,060	2,102
드림빌특별회계	1,951,573	58,547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1,435,974	43,07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862,252	145,868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976,009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세, 교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한다. (간주예산)